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이용약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목 차 >

제1장 총칙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범위)	4
제3조 (이용약관의 보고, 신고 및 변경)	4
제4조 (용어의 정의)	4
제5조 (기본서비스)	5
제6조 (부가서비스)	5
제7조 (서비스지역)	6
제8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처리시간)	6

제2장 약정

.....	<6>
제9조 (서비스의 이용신청)	6
제10조 (이용신청의 승인)	6
제11조 (약정사항의 변경)	6
제12조 (이용신청의 제한)	6
제13조 (서비스제공 개시)	7
제14조 (시험서비스)	7
제15조 (사서함 관리)	7
제16조 (이용자ID 등)	7
제17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8
제18조 (서비스의 일시중지)	8
제19조 (약정의 해제 및 해지)	8

제3장 이용자설비의 설치

.....	<9>
제20조 (이용자설비의 설치)	9

제21조 (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	9
제2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유지보수)	10
제23조 (설비검사 등)	10
제24조 (고장신고)	10

제4장 권리와 의무

.....	<10>
제25조 (양도 등의 금지)	10
제26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11
제27조 (회사의 의무)	11
제28조 (이용자의 의무)	11

제5장 요금

.....	<12>
제29조 (서비스 이용요금)	12
제30조 (요금납입방법)	12
제31조 (요금납입책임자)	13
제32조 (가산금의 부과)	13
제33조 (요금의 반환)	13

제6장 손해배상

.....	<14>
제34조 (손해배상)	14
제35조 (분쟁해결)	14

제7장 기타

.....	<14>
제36조 (면책조항)	14

부칙	<15>
별표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KTNET*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비스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이용약관의 보고, 신고 및 변경)

① 이 이용약관의 내용 중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관세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② 이용약관 내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기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보고 사항인 경우,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하거나 보고한 후 이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며, 이 때 회사는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각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혹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③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2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이용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사용의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전자무역기반시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을 체계적으로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신청자: 회사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3. 이용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인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및 이용하는 자에게 동 업무의 수행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4. 이용자설비: 이용자가 설치한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비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사서함: 전자무역기반시설 내에 이용자ID별로 할당된 전자적 자료저장소를 말한다.
6. 이용자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사서함에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본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거래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외 물품 교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상역 /외환/통관/물류/결제/전자민원 등의 행위 시 필요한 무역문서에 대한 전자무역문서의 표준 준수여부 검증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전자문서 보관 등
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해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를 무역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상 제 3자 유통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유통/증명한다.
3. 기반시설운영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부가서비스)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DB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 유통정보(상품 정보의 흐름)등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통신망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 기반시설 접속 등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이용자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3. SI/컨설팅 서비스
회사는 전자무역 구축 관련 보유한 기술력과 제품을 활용하여 시스템 설계/개발/구축 등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타

제7조(서비스 지역)

회사는 국내 전 지역 및 해외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서비스 제공시간 및 장애처리시간)

기본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에 따른 장애처리도 서비스 제공시간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제2장 약정

제9조(서비스의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양식의 KTNET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신청의 승인)

- ① 회사는 이용신청자의 신청사항과 설비의 용량, 기술적 여건 및 기타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② 회사가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 후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제9조의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신청의 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하였을 때
 -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3.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 4.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추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
 - 5. 설치장소, 설치장비 등이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 6. 기타 신청내용이 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7. 기타 이용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서비스제공 개시)

서비스제공 개시일은 제28조제5항의 가입승인서 발급일로 정한다.

제14조(시험서비스)

- ① 회사는 안정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서비스 기간을 설정하여 TEST ID를 통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시험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사서함 관리)

- ①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송수신된 전자문서 사서함에 보관된 문서를 중계보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용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별도 보관·관리한다.
-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에 교환되는 거래 전자문서의 종류, 송수신시간 등 전자문서의 이용 상태에 관하여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는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이용자ID 등)

- ① 회사는 각 사서함 당 하나의 고유번호 인 이용자ID를 부여한다.
- ②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 ID, 비밀번호의 사용 및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사를 변경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1. 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
 - 2. 기타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

제17조(서비스제공의 중지)

- ① 회사는 이용자가 국익 및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하는 경우, 국익 및 공익보호 차원에서 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때
3.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으로 선정된 때

③ 회사는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 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제18조(서비스의 일시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한다.

1. 이용자측의 장애 때
2. 이용자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전자무역기반시설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었을 때
3. 회사가 정한 정기 점검 때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서비스가 일시중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의한 서비스제공 일시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을 재개한다.

제19조(약정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개시 전에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제공 개시 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희망일의 7일 이전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서비스가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이용자가 회사의 정기점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3회 이상 서비스제공 중지를 당한 때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2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때

④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의사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이용자설비의 설치

제20조(이용자설비의 설치)

- ① 이용자는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사업장 등 기술상, 업무상 문제가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21조(이용자설비의 유지보수)

- ① 이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용자측의 구내 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설비를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서비스운용 중 회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이용자 설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망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요구로 회사가 장애보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실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이용자설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검사 3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인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전자무역기반시설의 유지보수)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한다.

제23조(설비검사 등)

① 이용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이용자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설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치변경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고장신고)

이용자가 이용자설비장애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는 점검한 후 회사에 대하여 고장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25조(양도 등의 금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권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설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이용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3.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입 또는 수탁기관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6.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이용자가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7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 ④ 회사는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제28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써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이외에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설비의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가입승인서가 발급되면 사용량 유무에 관계없이 전송료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5장 요금

제29조(서비스 이용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한다.

② 전자무역문서이용료 또는 전자문서전송료(이하 '전송료')중 송신료는 송신자가, 수신료는 수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약정을 적용한다. 또한 사서함별로 EDI서비스중계서비스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전송료 산정은 서비스별 단가에 전송량(또는 건수)을 곱하여 산정하되, 서비스별 사용량(또는 건수)에 따른 구간별 할인 및 특별 추가할인, 심야시간 할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 때 약정서 사본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설비(가입비)는 서비스개시일로부터 부과한다. 단, 개설 후 해지를 하더라도 개설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재개설을 할 경우에는 개설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과 같이 적용한다.

제30조(요금납입방법)

① 이용자는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인정하는 요금납입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로에 의한 방법

2. 은행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3.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

4. 전자납부에 의한 방법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③ 세금계산서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을 합산하여 익월에 발행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요금고지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⑤ 이용자가 납입방법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으로 청구한다.

제31조(요금납입책임자)

① 이용자의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는 이 이용약관에 따른 모든 요금 등을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32조(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매월 27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써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입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한다.

제33조(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 납입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반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4조(손해배상)

-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일까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35조(분쟁해결) 이 약관으로부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또는 이 약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개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7장 기타

제36조(면책조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부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 지연 혹은 중단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내용의 오류 및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작업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타사 서비스 등의 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부 칙

부칙 (2007.4.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부칙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부칙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부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부칙 (2016.4.2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별표>

KTNET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요금표

1. 상역/외환 등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이용료

(1KB=1,024Bytes)

구분	요금	내용
서비스 기본료	20,000원/월	사서함ID별로 부과 (uTradeHub 포털 이용시)
전자문서 전송료	392원/KB ~ 479원/KB	전송량에 따른 블록 종량 요금제 적용

- * uTradeHub 포털 외의 EDI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월 서비스 기본료 10,000원/ID 부과
- *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건별 이용자의 경우 건당 4,000원 부과(발급수수료 별도)
- * 기타 상세요금은 uTradeHub 서비스 사이트 참조

2. 물류/통관/관세환급 등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 이용료

(1KB=1,024Bytes)

구분	요금	내용
서비스 기본료	10,000원/월	사서함ID별로 부과
전자문서 전송료	물류 250원/KB 통관 330원/KB	전송량에 따른 블록 종량 요금제 적용

- * 물류, 통관 이외의 경우 부문별/업무 단위별로 차등단가 적용
- * 대관세청 물류/통관 XML 문서의 경우, 전송량에 조정계수(0.1) 적용, 예시) XML전송량 x 0.1 x 단가
- * 기타 상세요금은 uLogisHub 서비스 사이트 참조

3. 부가서비스 이용료

구분	요금	내용
적하목록취합 정보(MFCS)	40,000원/월 ~ 250,000원/월	이용주체별 정보이용량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무역통계정보 (CTI/KCIS)	기본 30,000원/월 전체 50,000원/월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등단가 적용
통신망(접속/회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	별도 단가	이용주체별 서비스 종류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 * DB서비스 상세요금은 cTradeWorld 및 uLogisHub 서비스 사이트 참조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요금은 Docuon 서비스 사이트 참조
- * 통신망 요금은 KTNET 이용약관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 참조